

물품 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가. 견명: 2027 신설학교(가칭)탕정8초 외 2교) 배기후드 구입
 - 나. 규격 및 사양: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다. 납품기한: 2026. 10. 31.
 - 라. 납품장소: (가칭)탕정8초, (가칭)탕정4중, (가칭)한여울학교
 -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바. 기초금액: **금60,164,700원** (추정가격 54,695,182원 부가가치세 5,469,518원)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하자보증기간: 1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7. 21.(화) 10:00 ~ 2026. 7. 23.(목) 10:00
-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7. 23.(목) 11:00 입찰집행관 PC(우리교육지원청 재무과)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가. 전자견적, 총액견적, 제한경쟁(지역 제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 나. 청렴계약제 체결 대상입니다.
-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상업용주방후드(세부품명번호 10자리 48101896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4810189601, 세부품명 상업용주방후드**)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견적서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바.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 배제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낙찰 하한율 88% 이상)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나.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단, 시스템장애 발생 등으로 자동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 추첨을 진행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추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5) 물품계약 특수조건
 -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 다.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라.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 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등재가 됩니다.
- 바.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김수진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 041-539-2277, FAX: 041-544-4162, E-mail: cnased@cne.go.kr

- 담당 부서, 담당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서연자 ☎041-539-2476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입찰 회선 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041-539-2277)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7월 15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